

[별표 1]<개정 2000.7.29.>

행정처분기준(제11조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(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)에 의하며,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.
- 다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다만,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라.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가.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

위 반 사 항	해 당 법조문	행 정 처 분 기 준		
		1회위반	2회위반	3회위반
(1)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1호	등록취소		
(2)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2호	사업정지 3월	사업정지 6월	등록취소
(3)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(법인의 경우 6월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	법 제13조제1항 제3호	등록취소		
(4)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5호	사업정지 1월	사업정지 3월	등록취소
(5)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6호	사업정지 3월	사업정지 6월	등록취소
(6)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	법 제13조제1항	사업정지	사업정지	등록취소

의한 조치에 위반한 때	제7호	3월	6월	
(7)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8호	사업정지 3월	사업정지 6월	등록취소
(8)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(가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때 (나)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9호 법 제13조제1항 제9호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 경고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	등록취소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
(9)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10호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	등록취소
(10)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·운송 또는 보관한 때 (가)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·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(나) 기타 유사석유제품의 경우	법 제13조제1항 제11호 법 제13조제1항 제11호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2월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4월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	등록취소 등록취소
(11)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12호	사업정지 3월	사업정지 6월	등록취소

(12)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13호	사업정지 1월	사업정지 3월	등록취소
(13)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14호	사업정지 1월	사업정지 3월	등록취소

나.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처분기준

위 반 사 항	해 당 법조문	행 정 처 분 기 준		
		1회위반	2회위반	3회위반
(1)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	법 제13조제2항 제1호	등록취소		
(2)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	법 제13조제2항 제2호	사업정지 3월	사업정지 6월	등록취소
(3) 법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(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	법 제13조제2항 제3호	등록취소		
(4)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	법 제13조제2항 제4호	사업정지 1월	사업정지 3월	등록취소
(5)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(5)내지 (7)의 1에 해당한 때	법 제13조제2항 제5호	사업정지 3월	사업정지 6월	등록취소
(6)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(8)에 해당한 때 (가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때 (나)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때	법 제13조제2항 제5호 법 제13조제2항 제5호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 경고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	등록취소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
(7)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(9)에 해당한 때	법 제13조제2항 제5호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	등록취소

(8)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 (10)에 해당하는 때 (가)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 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 유·등유 또는 경유를 혼 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 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(나) 기타 유사석유제품의 경 우	법 제13조제2항 제5호	해당사업 장의 사 업정지 2 월	해당사업 장의 사 업정지 4 월	등록취소
	법 제13조제2항 제5호	해당사업 장의 사 업정지 3 월	해당사업 장의 사 업정지 6 월	등록취소
(9)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 (11)에 해당하는 때	법 제13조제2항 제5호	사업정지 3월	사업정지 6월	등록취소
(10)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 (12) 및 (13)에 해 당할 때	법 제13조제2항 제5호	사업정지 1월	사업정지 3월	등록취소

다.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

위 반 사 항	해 당 법조문	행 정 처 분 기 준		
		1회위반	2회위반	3회위반
(1)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등록을 한 때	법 제13조제3항 제1호	등록취소		
(2)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 니한 때	법 제13조제3항 제2호	사업정지 3월	사업정지 6월	등록취소
(3)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 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 을 공급한 때	법 제13조제3항 제3호	사업정지 1월	사업정지 3월	등록취소
(4) 법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준 용되는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 에 해당하는 때(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)	법 제13조제3항 제4호	등록취소		

(5)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	법 제13조제3항 제5호	사업정지 1월	사업정지 3월	등록취소
(6)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 (5) 내지 (7)의 1에 해당하는 때	법 제13조제3항 제6호	사업정지 3월	사업정지 6월	등록취소
(7)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 (8)에 해당하는 때 (가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때 (나)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때	법 제13조제3항 제6호 법 제13조제3항 제6호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 경고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	등록취소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
(8)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 (9)에 해당하는 때	법 제13조제3항 제6호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	등록취소
(9)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 (10)에 해당하는 때 (가)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·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(나) 기타 유사석유제품의 경우	법 제13조제3항 제6호 법 제13조제3항 제6호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2월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	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4월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	등록취소 등록취소
(10)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 (11)에 해당하는 때	법 제13조제3항 제6호	사업정지 3월	사업정지 6월	등록취소
(11)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 (12) 및 (13)에 해당하는 때	법 제13조제3항 제6호	사업정지 1월	사업정지 3월	등록취소